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9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박정훈

임이자 · 강승규 · 신동욱

백종헌 · 김은혜 · 고동진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선박시설의 기준 및 선박위치 발신장치 등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 선박에 선박 보안과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 자료 부족으로인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격 및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설치 기준부재로 인하여 설치 형태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 기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①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
	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u>령으로 정한다.</u>
제89조(과태료) ① (생 략)	제8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 28. (생 략)	8. ~ 2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